#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58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노웅래·서영석·소병훈

송옥주 · 신정훈 · 유기홍

이병훈 • 이수진(비) • 임호선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한준호 의원(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되는 등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 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안 제4조).
- 나.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 등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환경부장관은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에 따라 도시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변경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 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 사.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방지대책 사업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 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아. 정부는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21조).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침수피해"란 홍수에 의한 외수범람 및 하수관로와 그 밖의 배수시설에 의한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 2.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류하거나 인접 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3. "특정도시하천"이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

- 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에 대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하천을 말한다.
- 4. "도시침수방지시설"이란 도시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제방
  - 나. 저류지
  - 다. 방수로
  - 라. 배수펌프장
  - 마. 우수관로
  - 바. 저류조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도시침수피해방지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의 홍수량 경감 및 홍수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주관기관 등) 이 법에 따른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 방지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하수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및 특정도시하천의 지정 등

- 제6조(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①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대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 2.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도시침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 1. 특정도시하천의 지정과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2. 중앙행정기관 간,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이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침수방지 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또는 실무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같다.

- 1. 특정도시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의 기본방향
- 2. 특정도시하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특정도시하천침수방지시설의 정비 및 연계에 관한 기본사항
- 4.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의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사항
- 5.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자연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특정도시하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하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특정도시하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특정도시하천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을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특정도시하천의 지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고시에 있어서 지형도면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른다.

제3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도시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1.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의 기본방향
  - 2.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시설의 정비 및 연계에 관한 사항
  - 3.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4.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계획의 변경 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하는 도시침수방지시설 관련계획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도시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획 자체 내에서 상충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특정도시하천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도시하천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때에는 도시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및 광역시설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침수방지사업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관련 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 자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정도시하천에서 도시침수방 지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협력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립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침수방지시설의 활용에 관한 특례) ① 특정도시하천구역에 설치하는 도시침수방지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시침수방지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 원
  -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또는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침수방지시설을 다른 시설과 겸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의 일부를 면제 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도시하천유역에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 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 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도시침수방지시설사업의 사후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 방지대책 사업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서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때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도시침수방지대책사업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도시침수방지대책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 제20조(도시침수방지대책 자료의 정보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침수방지대책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시침수방지대책 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별 도시침수방지대책 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침 수방지대책 관리 정보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개발) 정부는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도시침수방지기술 조사 연구
  -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제22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도시침수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② 정부는 개발도상국가가 도시침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 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도시 침수방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도시침수방지를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23조(수익자부담의 원칙) ① 특정도시하천의 침수방지대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책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비용의 징수 관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부담금 또는 비용은 도시침수방지대책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제24조(특정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정부는 특

정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도시 하천 침수방지대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및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정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